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직무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9일(토) 12시 / 광화문 코리어나 호텔 2층 다뉴브

□ 참석자

- 왕상한, 유준구, 박언경, 오선영, 유희진, 이세련, 김두수, 박주석

< 안 건 >

1. 집행부 구성

-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 서철원(수석부회장), 이재민, 정영진(부회장)
- 기획이사: 유준구
- 총무이사: 박언경
- 연구이사: 오선영
- 국제이사: 유희진 / 이세련
- 출판이사: 김두수
- 사무국장: 박주석

2. 학술회의

- 국내 총 2회 국제 총 2회 학술회의 개최
 - 제1차: 3월 25일 - 신진학자 학술회의 (서강대학교)
 - 제2차: 6월 10일 - 국제학술회의 (투자관련_대한상사중재원)
(지원금 1,000만원)
 - 1월 18일~22일 중 실무회의 개최 : 연구/출판/사무국장 참여
 - 제3차: 10월 24일 - 국제학술회의 (개최지 : 멕시코 추진)
주제안 : "기존TPP 체결국가와의 협력구축"
 - 제4차: 12월 15일 - 국내학술회의 겸 총회

3. 통상법포럼

- 2016년 통상법포럼 진행 여부 검토
- 검토내용
 - * 년 4회~6회 개최 추진 협의 (4, 5월 / 7, 8월 / 10, 11월)

4. 2016년 국제투자분쟁연구 발간

- 대한상사중재원 지원 (500만원)
- 2014년 이후 연속사업으로 진행
- 2016년 1월 18일~22일 중 실무회의 개최 : 연구/출판/사무국장 참여
 - * 2015년 국제투자분쟁연구 발간작업 점검 (대한상사중재원 요청사항)
 - * 전체 구성방향 및 주제 / 글의 형식 / 감수자 / 책자 발간 예정일
- 검토내용
 - * 연구이사, 출판이사가 주축이 되어 동 사업 추진토록 함

5. 국제경제법연구 출판

- 년 3회 발간
- 학술지 평가 대비
 - * 세부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6. 신국제경제법 개정작업

- 2013년 1월 보정판 발간
- 검토내용
 - * TF 구성 등 진행방식 논의 : PM 위촉 등의 다양한 방식 논의진행
 - * 동 건은 추후 이사회에 상기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토록 함

7. 연구용역 수주 추진건

- 발주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규범과 (한철희 팀장(지식재산담당), 044-203-5821)
- 경과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에서 학회소개
 - * 무역규범이 원산지/노동/환경/정부조달등 범위가 넓은데 국내제도가 개편된지는 오래되었음. 따라서 선진국사례 조사와 가장 최신자료를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제기 (국내이행문제등)

- * 동 분야 국내최고의 전문가로 연구진 구성 요청
- * 동 건에 대하여 1월 13~20일 사이에 서울에서 연구참여자와의 간담회 진행희망
- 검토내용
 - * 연구진(연구책임자) 구성 및 진행 방식논의
 - * 사안의 신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공개모집을 통한 방식이 어려운 점을 인식.
 - * 이에 학문적 성과가 높은 학회원 중 1인을 PM으로 위촉하여 프로젝트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 * 직무이사회에서는 부회장 중 1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연구용역 추진토록 함. 이에 대한 추진실무는 연구이사가 담당토록 함.

8. 2016년 WTO 모의재판

- 추진주체 및 추진방식 논의
- 검토내용
 - * 대회주관기관인 학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 WTO 모의재판위원회의 역할수행방안 검토
 - * 동 건은 추후 이사회에 상기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토록 함

9.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5년 위원회 구성 현황 (2014년 12월 이사회 의결사항)
 - (1)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장 : 서철원 교수
 - (2) WTO모의재판 위원회 위원장 : 성재호 교수
 - (3) 기금 위원회 : 왕상한 교수
 - (4)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회 : 운영여부 및 위원장 선출은 차기회장에 위임
 - *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선임된 위원장에게 구성을 위임함.

제17조(위원회)

- (1) 본 학회에는 제도개선 위원회, WTO 모의재판 위원회, 기금 위원회,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등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회장에게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직무이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검토내용
 - * 2016년도는 제도개선위원회, WTO모의재판위원회 2개 위원회 운영할 것을 결정함

10. 학술상 운영 건

- 학술상 상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시상만 진행(2015년 임시이사회 의결 사항)
- 검토내용
 - * 세부 기준의 수립 필요 : 관련규정의 신설 등의 방식 검토
 - * 학술상의 운영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해 직무이사회의 의견이 일치함.
 - * 동 건의 추진은 총무이사가 제도개선위원장과 협의하여 실무를 담당토록 함.

11. 정관개정건

- 검토내용
 - * 임원회비규정 보완 : 회장 (300만원) / 수석부회장 (200만원) / 부회장 (100만원)
 - * 이사회의 임무 보완 : 임기 등에 관한 규정 보완필요성 검토
- 검토내용
 - * 총무이사가 제도개선위원장과 협의하여 동 건에 대한 실무를 담당토록 함.

12. 기타안건

- 연간 학회운영일정 수립 및 공지
- 학회운영기금 후원요청 공문 발송
 - * 법무법인 율촌 최정열 변호사 (jychoe@yulchon.com)
 - * 법무법인 광장 안용석 변호사 (yongseok.ahn@leeko.com)
- 회장인사말씀 준비 및 발송
- 편집위원장 임기 규정 명문화(2년 이상)
 - * 학술지 평가대비를 위해 편집위원회 규정 제6조 개정이 필요
 - * 편집위원회의 규정개정은 편집위원회 소관이므로 추후 소집되는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토록 함(편집위원회 규정 제9조)

- 등기진행 (관련서류는 1월 20일 이사회 및 총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
- 1월 20일 총회 및 이사회 준비
 - * 일시 및 장소 : 7시 30분
 - * 주요안건
 - (1) 편집위원선출 건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2항 - 전체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 (2) 정관개정건
 - 1) 이사회의 권한 규정 신설
제안이유 : 이사회의 실질적인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
내용 : 현 정관 제15조(이사회의 의결)를 제15조(이사회의 권
한과 의결)로 하여 세부 내용을 반영토록 함. 세부내
용은 제도개선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행.
 - 2) 임원의 회비 규정 신설
제안이유 : 학회운영기금의 확보를 통한 학회재정의 강화. 정
관 제18조(본회의 자원)에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도
록 되어 있으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에 반
영토록 함.
내용 : 제18조 3항 신설 - 회장 300만원, 수석부회장 200만
원, 부회장 100만원 (안).
당해 연도(2016년도부터) 적용(부칙 조항에 명기)
 - (3) 학술상시상규정 신설
 - (4) 신국제경제법 개정판 발간관련 추진방안 논의
 - (5) 2016년 WTO 모의재판 준비 및 WTO 모의재판 위원회 운영건
 - (6) 이사 임원 임기 개선건
 - 미참여 이사의 재선임 배제

< 첨부 >

출판분야 사업계획서

I. 2016년 출판계획

『국제경제법연구』 3회 발행: 일정은 아래와 같음

	논문접수마감일	논문심사마감일	발행일	
제14권 제1호	2월 20일	3월 10일	3월 31일	
제2호	6월 20일	7월 10일	7월 31일	
제3호	10월 20일	11월 10일	11월 30일	

II. 기타

학술지(『국제경제법연구』)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심사(2017년 3월 예정) 고려 준비

: 등재지 유지: 85점 이상

1) ‘피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 논문작성시 본 학술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도록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 홍보대상: 본 학회 회원, 그 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 본 학술지 외에 타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도 다수 인용되도록.

* 홍보방법: ‘등재지’인 본 학술지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이는 회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2) 학회 ‘규정’ 보완 여부 검토

-학술지 편집위원장 임기 2년 명시(2점 중 2점): 위촉장 또는 내부결재 공문 확보

3) 편집위원 연임 및 신임 여부 검토(6개 지역 이상: 4점 중 4점)

4) 학술지 평가시 제14권 제1호의 중요성 유념: 특히 첫째 및 둘째 논문

- 각 호별 게재논문 수 평균 유지

- 편장별 고른 주제의 게재

- 게재율 60~69% 필요(5점 중 4점)

- 참고문헌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 확보

- 논문명 및 저자명의 외국어화: 2016년부터 로마자 표기만 인정할 예정(영문에서 로마자로 변경됨)

- 원본 제출은: 제14권 제3호

5)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교육실적 확보를 위하여 이메일 교육, 학술대회시 교육 등 증거자료 확보 필요. 또한 KCI 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도 고려.

6) 학술지 발전을 위한 국제화 노력: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게재 노력 등

7) 학회 및 학술지 관련 정보 변경사항 수정: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